
2021년 9월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

■ 추진 목적

-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정책 및 활동을 대외 관계자분들께 홍보하여 국가청렴도 개선 등에 적극 기여

■ 주요 내용 (총 3건)

- ① 국민권익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21.6.7., 8.23.)
- ② 국민권익위-한국부패학회, '반부패·청렴' 학술대회 개최('21.8.27.)
- ③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수용으로 위기에 처한 중장비 경매사업 중소기업 고충 해결"('21.8.13.)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717)

국민권익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16건),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린민주당 1명(1건)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 -

(2021. 6. 7., 8. 23., 국민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6월 7일, 8월 23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 지난 3. 30. 더불어민주당, 6. 9. 비교섭단체 5개 정당, 6. 11. 국민의힘으로부터 조사요청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요청 이후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現 단장 김태웅 상임위원)을 꾸려 4월부터 1차 조사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과 6월부터 2차 조사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였다.

* 단장, 부단장2(권익위 비상임위원 2명, 여·야 추천 각 1명), 대외협력반, 조사반(검·경 출신 조사 전문인력 및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포함)

< 조사 개요 >

- **(대상)** 1차 81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17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42명
2차 507명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 및 그 가족 335*명(총 437명),
비교섭 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14명 및 그 가족 56명(총 70명))
* 국민의힘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가족 총 3명 제외(※더불어민주당: 미동의 가족 2명)
- **(기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을 고려한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내역
- **(방법)** 부동산거래내역 등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서면 조사 및
현지실사 및 탐문조사 등

□ 조사관련 법령근거

특별조사단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요청하였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부동산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제출 받았고,

부패방지 실태조사 권한과 내용들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을 규정한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9조, 제56조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였다.

□ 조사절차와 방법

1차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의 조사단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2차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도 진행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범위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들이 심층조사하고 교차 검증하였다.

□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총12명(16건),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으며, 특별조사단은 이를 6월6일, 8월23일 각각 특수본에 송부했다.

더불어민주당관련 송부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다. 이 중 3기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혹 유형>

- **(부동산 명의신탁)**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 **(업무상 비밀이용)**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
- **(농지법 위반)**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고,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주요 의혹 유형 >

- **(부동산 명의신탁)**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
- **(농지법 위반)**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여 사인간 불법 임대차, 농지의 불법 전용 등
- **(편법증여)**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 의혹이 있는 경우
- **(업무상 비밀이용 등)**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

특별조사단은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조사내용을 특수분송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통보하였다.

- 한편 특별조사단은 100%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의 조사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미제출 가족(6월 28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8명)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각 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대부분 제출 완료되었고,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의 의원이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대해 8월 23일 전원위에서 동의서 미제출 의원들의 소명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원위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국민의힘과 비교섭 5개 정당에도 제안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안 요약 >

- 국회의원이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할 때 부동산 거래 적법성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거래상대자, 관계, 공유 여부) 등을 포함하고 이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
-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예산심사, 법률 제·개정,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절차 및 관리 방안 마련
- 국회의원과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부동산 거래 신고의 처리와 검증의 주체, 이해충돌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

□ 국민권익위 김태웅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한국부패학회, ‘반부패·청렴’ 학술대회 개최

-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정책 실현 위한 정책진단과
향후 발전과제 심층 논의 -

(2021. 8. 27., 국민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부패학회(회장 조재현)는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진단과 향후 발전과제’를 주제로 27일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청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 국민권익위와 한국부패학회는 학술대회를 총 3부로 구성하고 법제·정책·추진 체계 등 3개 분야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먼저 1부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과 반부패 정책추진 체계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이승택 상명대 교수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검토’를 발표한다. 이어 공직자의 대표적 행위 규범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통합방안을 제안한다.

2부에서는 ‘사회적 부패(환경)방지를 위한 법정책학적 모색방안’을 주제로 정신교 목표해양대 교수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추구행위 원천 차단, 내부고발자 보상 강화 등 신고자 보호정책의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김애진 경상국립대 교수는 ‘지대추구와 부패’를 발표하면서 청렴도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 및 내부 감사 기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반부패정책의 확립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국가청렴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주제로 이선중 서울시립대 반부패 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지속가능한 국가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사회통합지수와 부패인식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사회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학술영역에서 반부패·청렴을 연구하는 한국부패학회와 반부패·청렴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부패학회 조재현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심도 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수용으로 위기에 처한 중장비 경매사업 중소기업 고충 해결 “

- 국민권익위 결정으로 신규고용 280명 등 200억 원의 경제효과 기대 -

(2021. 8. 13., 국민권익위)

-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이행돼 사업예정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의 오랜 고충이 해소됐다.
- 특장차 관련 중소기업 대표인 신청인은 해외 박람회를 통해 선진국에서 중장비 경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2010년부터 중장비 경매사업의 국내 추진을 위한 사업예정부지를 확보했다.

그런데 공기업이 진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 사업부지가 편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당초 공익사업에 신청인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산업·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홍수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부지가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 신청인은 홍수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체사업부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공기업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사업부지를 공익사업에 제공했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기업은 현금보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신청인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지난 2019년 3월에 국민권익위에 기업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이 접수된 후 총 23회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와 조사를 통해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

신청인은 이미 기존 공장의 자동차매매시설 용도 변경, 포장공사, 국·내외 중장비 제조업체와 업무협약 등 사업을 추진해 현금보상

만으로는 당초 사업부지에 걸맞은 대체부지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령 등을 세심히 검토한 결과, 국민권익위는 토지가 수용되는 기업에게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토대로 대체부지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도록 2020년 12월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을 했고, 올해 7월 그 결실을 맺게 됐다.

- 신청인은 “대체 사업부지가 마련돼 향후 계획대로 중장비 경매 사업이 진행된다면, 280여명의 신규고용을 포함한 2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감사와 기대를 전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의도치 않게 오랜 기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고충이 해결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긴급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